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90호)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19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90호)	1
2.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19호)	3
II . 주요 내용별 검토	5
1.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5
가. 개정안의 내용	5
나. 검토의견	25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31

I. 개요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9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6. 28.
- (3) 회 부 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사용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각각 정의하고,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아니지만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결국,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특례 조항 신설에 필요한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6 신설).

나.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이들의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7 신설).

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연금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납부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8 신설).

2.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1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4. 7. 11.

(3) 회 부 일 : 2024. 7. 12.

나.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 신설).
- 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신설).
- 라.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연금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가입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신설).
- 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사업주가입자 전환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노무제공자’(한정애의원안·전종덕의원안)와 ‘예술인’(전종덕의원안)이 사업주가입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의 계약상대방인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플랫폼 운영자(한정애의원안)’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전종덕의원안)’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전종덕의원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하고(안 제5조), 저소득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규정하며(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사업주의 금지행위로서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하는 불리한 대우의 유형에 ‘계약해지·계약연장거절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안 제119조).

1)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한정애의원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한정애의원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의2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u> <u>제100조의6(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u> <u>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u> <u>과 같다.</u> 1. “노무제공자”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 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 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 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 람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주”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 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노무제공 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이란 일 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 는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 리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전자적 정보처리시 스템은 제외한다. 4.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온라인 노 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 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5. “플랫폼 이용 사업주”란 플랫폼

현행	한정애의원안
	<u>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u> 2.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사업에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4.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노무제공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노무제공대가 등의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

현행	한정애의원안
<신설> 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는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⑥ 플랫폼 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에게 그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등의 신고와 연금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 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0조의9(준용 및 적용) 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의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용관계가 끝난 때”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때”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연금보험료의 부담·징수, 급여, 수급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에 관하여 제1항, 제100조의7 및 제100조의8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장, 제4장, 제5장, 제7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 ----- -----

현행	한정애의원안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u>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28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u>사용자</u> 3. 제119조를 위반하여 <u>근로자가</u>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u>근로자의</u>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	----- ----- -----<u>사용자, 사업주(제100조의6제2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플랫폼 운영자(제100조의6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자</u>-----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00조의8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 제100조의6제4호·제5호에 따른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 2. 제95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u> 3.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u>-----<u>근로자 또는</u>

현행	한정애의원안
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생략)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③ (생략)	<u>노무제공자의-----사용자 또는 사업주</u> 4. (현행과 같음) 제131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0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플랫폼 운영자</u> 2. ----- ----- ----- -----<u>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u>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3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이 법 이생 이후에도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않은 노무제

현행	한정애의원안
	공자 및 사어붓로서 제5장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전 종 덕 의 원 안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현행	전 종 덕 의 원 안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등) ①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근로나 노무를-----말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 ----- ----- -----말하며, 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신설>	나. 계약의 체결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현행	전종덕의원안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u>사용자</u> 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 사용자(사업장가입자가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 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 우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 -----.
12. ~ 19. (생략)	12. ~ 1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생략)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 공자를 대표하는 위원 2명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23조의3제

현행	전종덕의원안
② · ③ (생략)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생략)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u>제13조까지</u>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u>제21조에</u>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생략)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생략)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에 따라 <u>근로자에게</u>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u>1항에 따라 계약의 개시가 이행된 때</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u>----- -----. ③ ----- ----<u>제21조,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2항 및 제23조의4제1항에</u>-----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임금이나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가에서</u>----- -----. ③ ----- ----- ----- -----<u>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u>----- ----- -----

현행	전종덕의원안
<u>근로자</u>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1. 2. (생략) ④ (생략)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u>근로자가</u>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u>근로자에게</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⑥ (생략)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 -----. -----<u>근로자</u>,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u>노무제공자</u>는-----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근로자</u>,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u>노무제공자가</u>----- -----<u>근로자</u>,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u>노무제공자에게</u>-----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 -----<u>제21조</u>, <u>제23조의2제2항</u>, <u>제23조의3제2항</u> 또는 <u>제23조의4제1항</u>----- -----. ② (현행과 같음) <u>제2장의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u> <u>제23조의2(예술인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u>

현행	전종덕의원안
<신설>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개시일에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의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3(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

현행	전종덕의원안
	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에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전종덕의원안
<u><신 설></u>	제23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3.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연금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가입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

현행	전종덕의원안
	<u>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1. <u>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u> 2. <u>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가입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u> 3. <u>노무제공자의 가입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u> ③ <u>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④ <u>국민연금공단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연금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u> ⑤ <u>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가입자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u>

현행	전종덕의원안
<u><신 설></u>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때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u>제100조의3제1항</u>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근로자에게</u>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5(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원천공제) 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체납에 대해서는 제9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 ----- ----- ----<u>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u>----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근로자(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92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8조제3항제3호에서 같다)</u> <u>에게</u>----- -----.

현행	전종덕의원안
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u>제100조의3제1항</u> 및 <u>제100조의4제1항</u>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28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u>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u>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 ----- ----- <u>제100조의3제1항 · 제2항</u>-----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8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해고 · 계약해지 · 계약연장거절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등</u>-----

현행	전종덕의원안
한 사용자 4. (생략)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생략) ② · ③ (생략)	----- 4. (현행과 같음) 제131조(과태료) ① ----- ----- -----. 1. 제21조제1항 · 제23조의2제2항 · 제23조의3제2항 및 제23조의4제1항-----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해당 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 현행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종류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면서,²⁾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연금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의 4.5%씩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음.³⁾

-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으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어,⁴⁾

사업장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노무제공계약이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노무제공자(한정애의원안·전종덕의원안) 및 예술인

2) 「국민연금법」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3)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4)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의미한다.

(전종덕의원안)을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가입자에 포함시켜 이들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기준소득월액의 4.5%)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29호)이 함께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2010년대 이후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2020~2022년에 걸쳐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각각 개정되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왔는데,

개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편 방향을 국민연금에도 확대·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⁵⁾

- (고용보험) 2020년 6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우선 추가되었고,⁶⁾ 2021년 1월 같은 법이 다

5) 참고로,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91.7%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 4. 21.)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서 보기로 제시된 ‘플랫폼, 원청기업 등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하여 특수형태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음.

시 개정되어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음.⁷⁾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신설된 이후 2022년 1월 및 2022년 7월 두 차례 더 개정되어 가입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직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음.

< 노무제공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시행일	노무제공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2021년 7월 1일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2022년 1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2022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캐디 및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 6)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7)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현재 가입 대상에 미포함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가입 대상 확대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만 했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⁹⁾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를 정의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2년 6월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¹⁰⁾

※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의 범위가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노무제공자’를 새롭게 정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가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에서 기존 가입 대상 직종 종사자 중 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될 수 없었던 노무제공자를 비롯하여 고용보험만 적용 중이던 직종도 피보험자 범위에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음.

9) 법률 제178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 ⑪ (생략)

<2022. 6. 10. 삭제>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노무제공자인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비고
2008년 7월 1일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캐디	전속성 요건 충족 필요
2012년 5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2016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및 대리운전기사	
2020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및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원)	
2021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소프트웨어 기술자	
2022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원)	전속성 요건 폐지
2023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택송기사, 대리주차원,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2024년 1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및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	

□ 다만, 사업주에게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반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고용 여건과 해당 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3년 10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례를 참조하여 특수형태 근

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은 2024년 4월부터 노무제공자의 근로실태 등 현실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가입자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포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24년 12월 말 연구 보고서 발간 예정).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가입 지원 관련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가입 지원

③ 추진방향

- (기본방향) 고용·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 연금보험료율(9%)이 고용(1.6%)·산재보험(0.5~3.4%)보다는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 고려 필요
- (우선적용) 소득신고방식, 사업주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 파악 및 관리가 능성이 높은 대상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논의
 - 우선대상이 아닌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 완화
- (검토사항) 노무제공자의 특수성, 고용·산재보험 사례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대한 재정의, 부과소득 범위, 보험료 부담비율 등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건복지부는 노무제공자·예술인 등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 2024년 8월 현재 국민연금연구원이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 등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그 조사결과('24년 12월 말 예정)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업장가입자 전환 방안을 마련한 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기획재정부는 노무제공자·예술인 등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되지만,
- 사용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사안이므로 사용자 단체와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의 형태*와 계약기간**, 임금*** 등이 비정형적 측면이 있어 면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의 경우 다수 사업자는 매니지먼트사로 부터 예술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보험료 등 처리에 관한 인력· 행정력 소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사업주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계약 형태) △ 사업자와 예술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 매니지먼트사와 예술인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자-매니지먼트사(중개)-예술인 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각각에서 기존 사회보험의 가입 형태와 사용자· 피보험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계약 기간) 문화예술용역에 따라서는 그 계약 기간이 초단기간(1회적 단발성)부터 장기간(전속계약)까지 다양한바,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이 빈번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행정력 등 수용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임금) 문화예술용역의 형태·기간 등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반대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채용·근속이 일정한 일반근로자와 달리 보험사-대리점 간 이동이 빈번한 보험설계사의 특성상 상 기 사회보험 적용 시 해당 보험사의 행정비용 및 업무부담이 상 당 수준 발생하고,
-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사회보험료 부담비용(1.5조원)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며, 이 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반대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이해와 대상의 명확한 구분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법률이 개정되면 향후 전속계약분쟁 등 다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신중검토

-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현행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예술인의 경우 수익을 분배받아 정산된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1인 사업자’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찬성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예술인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려는 전종덕의원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